

일제강점기 조선광업령으로부터 살펴본 광업법의 흐름과 시사점^{*}

The Flow and Implications of the Mining Law Seen from the Joseon Mining Decree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김 연 주^{**}
Yeon-joo Kim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기반으로 탄소 중립 및 친환경 지향을 위한 움직임이 다양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석유 등의 자원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제는 적절한 관리와 대비를 위한 기본제도 마련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한국 법제는 일제강점기 법제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항이 상당하다. 일제는 지난날 식민지 조선의 인적·물적인 다양한 수탈을 법제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는 우리의 뼈아픈 과거이자 잊을 수 없는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한 까닭 등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 행정체계와 법체계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제의 역사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광업법 관련 역사의적·법제적 시사점의 고민과 생각의 환기를

<http://doi.org/10.56475/ygsr.2023.28.2.1>

논문투고일 : 2023.11.11. 논문심사일 : 2023.11.13. 게재확정일 : 2023.11.27.

* 본고는 2022년 3월 25일 개최된 정보와 법 연구소 학술대회 “제국주의와 일제강점기 법령의 재조명: 현대 한국법의 실제 정립을 위한 제언”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前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전임 연구교수, 법학박사(E-mail: yeonjoo0622@yahoo.co.jp)
A Former Kookmin University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Law Research Professor, Ph.D.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아픈 역사이지만 그 속에서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현재 우리에게 참고될 만한 사항을 선별하고 보다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논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현실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원 관련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속에서 新 광물자원 등의 효율화 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자원을 보다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어: 광산자원, 일제강점기, 자원통제, 조선광업령, 조선총독부

목 차

I. 서설

II. 일제강점기 조선광업령

III. 한국의 광업법

IV. 시사점

I. 서 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기반으로 탄소 중립 및 친환경 지향을 위한 움직임은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아직은 석유 등의 자원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에너지 및 광물의 해외수입 의존도는 상당히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관련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¹⁾ 그러한 상황에서 법제는 적절한 관리와 대비를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면서 친환경 법제의 기본적인 제도 마련에서도 중요한 근간으로 자리한다.

한국 법제의 경우 일제강점기 법제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항이 상당히

1) 관련 기사 “코로나 끝나면 ‘쓰나미급’ 에너지 위기…자원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612>.

존재하며 법제의 역사적 검토는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서도 의의가 있다. 의도치 않게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1910년 국권을 강탈당하여 뼈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다. 그사이 수많은 희생이 존재하였다.²⁾ 인적인 수탈과 물적인 수탈을 각종의 법제도 등을 기반과 명분으로 내세워 합리화 및 합법화하여 식민지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였다.³⁾

특히나 그중에서도 광물자원에 대한 수탈을 위해서도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⁴⁾ 일본인들의 삶과 전쟁 준비 등에 있어서는 물적 자원 특히 광물자원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광물자원 관련법을 식민지 조선에 적용하여 겉으로 법제를 통한 관리를 가정한 속내의 물적 자원 수탈을 하였다. 그 의도와 실상은 그랬지만 광업령은 기본적으로 광물자원 개발과 광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광물자원 법제의 미래 준비 등의 차원에서 광물자원 개발 및 광업 등에 관한 기본적 제도를 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일제강점기 광업령 및 한국 광업법의 흐름과 시사점을 통하여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 등을 위한 기본 바탕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국사편찬위원회(1968), 일제침략하한국삼십육년사(日帝侵略下韓國三十六年史), 국사편찬위원회, 3면 이하 참조.

3) 배성준(1995), 1910년대 경성 공업의 식민지적 재편, 서울학연구 제6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86면 이하 참조.

4) 고승제(1953), 한국 광업사 서설 - 한국 산업사 연구의 일착, 경제학 연구 1권 1호, 한국경제학회, 49면 이하 참조, 배성준(2000), 戰時下'京城'지역의 공업통제, 국사관논총 제88권, 국사편찬위원회, 244면 이하 참조.

II. 일제강점기 조선광업령

1. 제정 배경 및 목적

조선광업령(朝鮮鑛業令)⁵⁾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식민지 조선의 광산자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정된 것이다. 외국인의 광산권 출원 허가와 공내부 소속 광산의 정리 등을 주된 내용을 하는 1905년 일본의 광업법을 참조하여 제정하였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광산에 대해 일본 자본이 독점적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제정한 입법 배경이 존재한다.

일제는 조선광업령을 통하여 식민지 조선에 진출한 일본 자본이 지하자원을 장악하고 이를 통한 환수이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하였다. 즉 이는 1905년 7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광업법을 기초로 하여 물적 자원의 경제 수탈을 위해 식민지 조선의 지하자원을 통제함으로써 일본 자본의 독점적 광업권 보장을 목적으로 지하자원 특히 광물 및 광산 관리권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⁶⁾

조선광업령 개정 경과

• 1915년 12월 24일 제정 ▶ 약 10차례의 일부개정 등 ▶ 1952년 2월 22일 폐지



<그림 1> 조선광업령의 개정 경과

- 5) 제령 제8호로 1915년 12월 24일에 제정되었고 1916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조선총독부 관보 제1018호로 게재되었다.
- 6) 국가기록원(2013), 일제문서해제-광업·미곡편-, 국가기록원, 17면 이하 참조.

조선광업령은 1915년 12월 24일 제정된 이래 약 10차례의 일부개정 등을 통하여 유지되었으며 광복 이후 광업법 제정에 따른 시행으로 1952년 2월 22일 폐지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⁷⁾

2. 주요 내용

1915년 12월 24일 제정된 제령 8호 조선광업령(朝鮮鑛業令)은 본문 제52조 및 부칙 제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업의 정의 및 관련 용어의 정의와 그 범위·광업권과 관련한 사항 등의 내용이다. 그 주요 내용은 크게 광업의 정의와 관련한 사항, 광업권의 소유, 총독의 임의 허가, 그 밖의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선광업령에서는 광업에 대해 광물의 채굴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광물의 종류에 대해 28종류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업법에서 규정된 광물보다 11종이 추가된 것이다.

광업권 소유에 대해서는 제6조를 통하여 “제국 신민 또는 제국법령에 따라 성립한 법인만 광업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제6조)”하여 기존에 인정되었던 외국인 광업권에 대해 그 허가가 금지되고 일본과 조선의

7) 조선광업령의 경우 광업법(법률 제234호 1951년 12월 31일 제정·1952년 2월 22일 시행) 제정에 따라 폐지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1945년 8월 15일 실효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8) 제정 당시 제1조 제2항에서 “이 영에서 광물이란 금광·은광·동광·연광·창연광·석광·안티모니광·수은광·아연광·철광·유화철광·격로모철광·만간광·텅스텐광·수연광·비광·인광·흑연·석탄·석유·토역청·유황·운모·석면·고령토·구사사금·사석? 및 사철을 말한다(제1조 제2항).”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1926년 5월 19일·1933년 1월 10일·1934년 9월 5일·1941년 6월 16일의 개정을 거쳐 제1조 제2항에서 “이 영에서 광물이란 금광·은광·동광·연광·창연광·석광·안티모니광·수은광·아연광·철광·유화철광·격로모철광·만간광·텅스텐광·수연광·비광·니켈광·코발트광·인광·붕광·흑연·석탄·석유·토역청·유황·운모·석면·고령토·납석(활석을 포함)·면반석·중정석·형석·마그네사이트·하석·납정석(홍주석 및 구선석을 포함)·규조토·구사·사금·사석·사철 및 희유원소를 함유하는 토석으로서 조선 총독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제1조 제2항).”라고 규정하였다.

개인이나 일본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광업권을 새로이 취득할 수가 있었다. 이는 기존 광업법에서는 일본인이 외국인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내국인 차별을 철폐했었다. 그렇지만, 1915년 시점에서는 일본인이 내국인 화가 된 상황이었기에 그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 광업권을 금지하고 다른 외국자본과의 경쟁에서 일본 자본의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화 한 것이라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기존 광업법과 조선광업령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⁹⁾

총독의 임의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제10조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 또는 광업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광업출원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제10조).”라는 총독의 임의 허가 가능 규정을 바탕으로 조선광업령을 통한 광업권에 대한 일제의 광산사업 독점이 지원되었다. 즉, 광산개발권에 관해 형식적으로는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그 개발권의 경우 일본의 자본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밖에 제32조 제1항 “광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용할 수 있다(제32조 제1항).”라는 규정을 바탕으로 민간 소유의 토지가 수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토지 소유자와 광산개발자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였고 이 경우에 일본 광산업자들이 조선총독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발생 되는 문제에 있어 고압적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가 잦아지게 되었다.

결국 조선광업령을 통하여 일제는 특정 지역 및 광물에 대한 출원을 제한하고 광업의 허가제 및 광업권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식민지 조선의 광업에 대해 독점적 장악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9) 김대형·이경한(2011), 「국내광업법의 변천과 개정 광업법에 관한 법제적 고찰」,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자원공학회지』, 48(5), 657면 이하 참조.

주요내용

- 조선광업령은 1915. 12. 24. 제정·1916. 04. 01. 시행된 제령 제8호로 전문 제52조, 부칙 제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업 등의 관련용어 정의와 그 범위·광업권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주요내용으로 구성

주요내용	
“광업”의 정의	• 광업에 대해 광물의 채굴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광물의 종류에 대해 28종류로 규정함
광업권의 소유	• 광업권 소유에 관한 규정 제6조를 통하여 재국 신민 또는 제국법령에 따라 성립한 법인만 광업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함 • 기존에 인정되었던 외국인 광업권에 대해 그 허가가 금지되고 일본과 조선의 개인이나 일본제국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만이 광업권을 새로이 취득할 수가 있도록 규정함
총독의 임의허가	• 제10조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 또는 광업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광업출원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총독의 임의허가 가능규정을 바탕으로 조선광업령을 통한 광업권에 대한 일제의 광산사업 독점이 지원되었다고 할 수가 있음 • 광산개발권에 관해 형식적으로는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그 개발권의 경우 일본의 자본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음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제32조 제1항 “광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민간소유 토지의 수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림 2> 조선광업령의 주요 내용

나아가 광물발견에 따른 허가원을 제출에 대해 도달주의를 채택하여 식민지조선인들에게 일확천금을 꿈꾸고 헛된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광업법 및 사광채취법과 조선광업령 시행으로 인한 식민지 조선의 광업에 대한 독점적 기반을 구성하였다.

3. 그 밖의 법령

1) 조선산금령

조선산금령(朝鮮産金令)은 일제가 황금 광산물 등의 생산을 관리 및 통제함으로써 군수 물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¹⁰⁾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일제가 군수 물품의 조달 수단으로 식민지 조선의 황금 광산물 및 금을 생산·통제하고자 반포한 법령으로 황금 광산물의 생산·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10) 조선총독부 관보 제3198호(http://viewer.nl.go.kr:8080/gwanbo/viewer.jsp?pagelId=GB_19370907_CA3195_001).

조선총독부가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한 입법 배경이 있다.¹¹⁾

이러한 조선산금령(朝鮮産金令)은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1937년 09월 07일 제정된 제령 제16호로 황금 광산물에 대해 조선총독부가 이를 생산 및 관리, 통제하기 위한 내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1조에서 “황금 광산물을 취득한 자는 조선 총독이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금괴로 제련하여 조선은행에 매각하거나 조선 총독이 지정하는 금 제련업자(제1조)” 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황금 광산물의 매입 면허를 받은 자(제2조 제1항)”에게 매각을 명하고 있다.

제2조에서 조선 총독의 황금 광산물의 매각지정 및 매입지정 관련 사항이 있으며, 제3조 금 제련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 면허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제5조 금 제련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을 정함에 있어 조선 총독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선 총독의 필요 인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이 가능하여지도록 하고 있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조선 총독은 산금의 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광 업자에 대하여 채광·채굴 또는 선광에 대한 설비의 신설·확장·개량·공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제련설비의 신설 또는 공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금광 업자에 대하여 그 광업권을 조선 총독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도록 명하고 있다.

그 밖에 황금 광산물에 대해 조선총독부에서 그 생산·통제를 하기 위한 관련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의 황금 광산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생산통제 및 관리를

11) 앞의 일제문서해제-광업·미곡편, 69면 이하 참조.

바탕으로 하여 일제의 군수 물품 조달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1937년 산금법 제정 이후 금 사용 규칙과 금의 매입 규칙 등에 근거하여 일본에서는 금의 자유 판매가 금지되어 모든 금과, 금제품은 정부에 팔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후 정부가 대외 결제를 준비하기 위해 금을 강제 매입하고 아울러 금 거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법률로 1953년 다시 산금법을 공포하였다. 일본의 산금법과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된 조선산금령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법문의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조선산금령에 내포된 것은 식민지 경제 수탈의 하나로 이른바 황금 광산물의 생산 거래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조선 중요광물 증산령

조선 중요광물 증산령(朝鮮重要鉱物増産令)은 식민지 조선의 중요 광물의 증산을 도모함으로써 중요광물의 수탈량을 증산시킬 목적으로 광업권 등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였다¹²⁾.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의 중요 광물의 증산을 도모하고 이를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 등을 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광업권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권한 행사의 기반이 더욱더 공고히 다져지게 되었다.

이러한 조선 중요광물 증산령(朝鮮重要鉱物増産令)은 1938년 05월 12일 제정된 제령 20호로 식민지 조선의 중요 광물의 증산을 도모하고 이를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한 관련 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중요광물의 종류 및 범위를

12) 조선총독부 관보 제3393호(http://viewer.nl.go.kr:8080/gwanbo/viewer.jsp?pageId=GB_19380512_CA3393_001).

금광·은광·동광·연광·석광·안질모니광·수은광·아연광·철광·유화철광·격어모철광·만업광·텅스텐광·수연광·니켈광·코발트광·흑연·석탄·운모·명반석·중정석·형석·“마그네사이트”·사금 및 사철(제1조)로 규정하여 이에 관한 관리·통제하기 위한 광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2조 및 제3·4조 등에서 중요 광물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광업권 양도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선 총독 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7·8·9·10조 등에 걸쳐 광업권의 재정과 결정에 대한 대가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조선총독부가 결정할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중요 광물의 광업권과 관련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의 중요광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통제 및 관리를 바탕으로 하여 일제의 군수 물품 조달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특히나 여기에서 규정된 중요 광물 중에서 마그네사이트의 경우 이를 개발하기 위한 조선 마그네사이트 개발주식 회사령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조선 중요광물 증산령(朝鮮重要鉱物増産令)은 1938년 3월 29일 법률 35호로 제정된 일본의 중요광물 증산법(重要鉱物増産法)과 유사한 내용¹³⁾을 지니고 있으며, 조선 중요광물 증산령의 제정일이 1938년

13) 한국의 조선 중요광물 증산령의 제1조에서는 “이 영에서 중요 광물이란 금광·은광·동광·연광·석광·안질모니광·수은광·아연광·철광·유화철광·격어모철광·만업광·텅스텐광·수연광·니켈광·코발트광·인광·붕광·흑연·석탄·운모·석면·명반석·중정석·형석·“마그네사이트”·하석·납정석(홍주석 및 규선석을 포함)·사금·사철 및 희유원소를 함유한 광물로 조선 총독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일본의 중요광물증산법의 제1조에서는 “이 법에서 중요 광물이란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주석광, 안티모니광, 수은광, 아연광, 철광, 황화철광, 격노모광, 나광, 중석광, 수석광, 니켈광, 석탄, 아탄, 황, 사금, 사철, 사석 기타 칙령을 통해

5월 12일인 것을 생각한다면 일본의 중요광물 증산법이 제정된 후 이에 관해서 조선에도 적용하기 위해 조선 중요 광물 증산령이 제정되는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조선 마그네사이트 개발 주식회사령

조선 마그네사이트 개발 주식회사령(朝鮮マグネサイト開發株式會社令)은 식민지 조선의 마그네사이트 개발 등을 하기 위함으로써 설립된 조선 마그네사이트 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¹⁴⁾ 조선에 있는 마그네사이트의 개발을 하기 위해 조선 마그네사이트 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조선 총독부가 관리 및 통제하여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고 합법을 가장한 강제적 자원 수탈을 위해 법제화하였다.

이러한 조선 마그네사이트 개발 주식회사령(朝鮮マグネサイト開發株式會社令)은 1939년 4월 28일에 제정된 제령 제7호로 조선에 있는 마그네사이트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조선 마그네사이트 개발주식회사에 관한 내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마그네사이트 개발주식회사의 설립목적과 본점의 위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조선 마그네사이트 개발주식회사의 자본 및 소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조선 마그네사이트 개발 주식회사의 임원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 제8조 등에서는 조선 마그네사이트 개발 주식회사의 업무

지정하는 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들의 규정하는 대상에 대한 유사성을 엿볼 수 있다.

14) 조선총독부 관보 제3679호(http://viewer.nl.go.kr:8080/gwanbo/viewer.jsp?pagelId=GB_19390428_CA3679_001).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조선 중요 광물 증산령에 규정된 중요광물 중의 하나인 마그네사이트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에서 그 생산되는 것에 대하여 특히 개발하여 이에 대해 통제 및 관리하여 일제의 군수 물품 조달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1911년 식민지 조선에 법률을 요구하는 사항은 조선 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려고 조선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을 법률 30호로 제정하였다. 조선 마그네사이트 개발 주식회사령은 조선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 1조의 “조선에서 법률이 필요한 사항은 사항이 생기면 조선 총독의 명령(命令)으로 규정할 수 있다(제1조).”라고 하는 규정과 제2조의 “이 명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칙재(勅裁)를 요청하도록 규정(제2조)”한 사항을 바탕으로 마그네사이트 개발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조선 마그네사이트 개발 주식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4) 조선 광업진흥 주식회사령

조선 광업진흥 주식회사령(朝鮮鑛業振興株式會社令)은 조선에 있는 중요 광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 그 증산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¹⁵⁾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장기화에 이르게 되자 일본의 경제는 전시체제로 돌입하게 되었고 군수산업의 원료로서 필수 불가결한 중요광물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비해 수입의 억제에 따라 국내 증산이 중요하고 필요하게

15) 조선총독부 관보 제4026호(http://viewer.nl.go.kr:8080/gwanbo/viewer.jsp?pageId=GB_19400622_CA4025_001).

되었다.

식민지 조선에는 일본에서 나지 않는 광물자원이 풍부하였고 그렇기에 조선총독부에서는 중요 광물의 증산목표를 달성하고 매년 증가하는 광물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였다. 조선에 있는 중요 광물 등 자원의 개발 및 생산 촉진을 바탕으로 증산하기 위하여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조선총독부가 합법을 가장하여 관리 및 통제하여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입법 배경이 있다. 그 중요광물 중에서 금광 및 사금은 제외하여 이들은 별도의 사항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 광업진흥 주식회사령(朝鮮鑛業振興株式會社令)은 1940년 6월 22일 제정된 제령 제33호로 조선에 있는 중요 광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 그 증산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조선광업진흥 주식회사와 관련한 사항 등이 내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의 규정들로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식민지 조선의 중요 광물자원의 개발 촉진과 증산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선 광업진흥주식 회사의 설립 목적 및 설립과 관련한 기본적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2장 임원과 관련한 규정들로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사장 또는 이사는 조선 총독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장의 영업 및 제4장 영업과 조선광업진흥채권과 관련한 규정들로 제11조, 제12조부터 제16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제11조에서 조선광업 주식회사가 중요광물 자원의 증산을 촉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① 마그네사이트 이외의 중요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② 중요광물에 관한 광산의 조사, ③ 중요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기술과 관련된 지도 ④ 마그네사이트 이외의 중요광물 매매

또는 앞선 ⑤ 중요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또는 제련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기계·재료 또는 설비의 매매 ⑥ 중요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또는 제련업에 대한 자금의 융통 또는 투자 ⑦ 그 외에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은 회사의 목적달성 상의 필요한 모든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명문화(제11조)하고 있다.

또한 제12조부터 제16조에서 조선광업진흥채권 등에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되고 있다. 그 밖에 제5장인 제17조에서 준비금과 관련한 사항 및 제6장인 제18조에서부터 제26조까지 감독 및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7장인 제27조와 제28조에서 벌칙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조선 광업진흥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되는 중요 광물자원에 대하여 이를 통제 및 관리하여 일제의 군수 물품 조달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총독부는 1939년 6월에 「조선 중요광물 증산령(朝鮮重要鑛物増産令)」을 공포하였으며 중요광물 개발과 그 증산을 위하여 「조선 광업진흥 주식회사령(朝鮮鑛業振興株式會社令)」을 1940년 6월에 제정하고 8월에 자본금 1,000만 원의 조선 광업진흥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조선 광업진흥 주식회사는 납입 자본금의 5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초기 6년 동안 납입 자본금에 대해 연 6%의 배당이 가능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943년 7월에 중요광물의 급속한 증산을 위해 동사는 자본금을 2,500만 원으로 증자하였으며 그중 1,250만 원이 정부 출자였다. 그해 9월에는 주식회사 제국광업개발 조선지사의 금광 정비사업 일체를 승계하면서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는 해방 후에도 광산을 직영하다가

1956년 9월에 해산되었다.

4. 검토

일본의 광업법은 광업 등에 대해 정한 일본의 법으로 1905년 3월 8일 공포되어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 광업령의 기초적인 사항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가 있다.¹⁶⁾ 조선광업령 이전인 기존 광업법에서는 일본인이 외국인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차별을 철폐하였다.

그렇지만 1915년 시점에서는 일본인이 내국인 화가 된 상황이었기에 그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 광업권을 금지하고 다른 외국자본과의 경쟁에서 일본 자본의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화한 것이라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기존 광업법과 조선광업령의 큰 차이점이다.

조선광업령은 특정의 지역과 광물에 대하여 그 출원을 제한하고 광업 허가제 및 광업권 등록제도를 도입시켜 일제가 한국의 광업을 독점으로 장악하도록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광물을 발견하여 허가원을 먼저 제출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한국인들에게 일확천금의 꿈속에서 산천을 헤매게 하였다. 즉 일제는 광업법과 사광채취법 및 조선광업령을 실시하여 식민지 광업을 독점하여 그 기반을 구축 및 강화 하였다.

1918년 일부개정을 통하여 조선광업령은 금광·은광·연광·철광·사금 및 사철에 관한 광산세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의 이후 광업 성수기를 맞이하여 일본인들이 광산자원 개발을

16) 일본의 광업법과 그 내용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따라서 외국인 광업권 신규 취득이 금지되었고 실질적으로 일본인 이외의 자가 광업권 취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인 제외 외국인의 광업의 경우 점점 쇠퇴하였고 반면에 일본인의 광업은 제1차 세계대전 영향으로 광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성황을 누리게 되었다.

그 밖에도 광업 상에 필요한 토지는 토지수용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광업권 처분 범위 및 공동광업권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해 분명히 하였다. 이는 당시의 토지조사사업과 목적이 유사한 것으로 광업 수탈 및 토지 수탈을 함께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재래식 덕대제의 폐지와 기존에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광업권을 없애고 일본인의 독점적 경영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광업법 위반의 경우 벌칙으로 기존에는 행정 처분을 하였으나, 조선광업령 위반의 경우는 그 사법관계 처리를 강화하였다. 만일 일본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사법권을 발휘하여 그 저항을 합법을 가장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방안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일제는 각종 주요광물과 관련하여 법제를 바탕으로 한 주식 회사를 설립하여 속내와 별개로 체계적이고 합법적임을 겉으로 내세워 자원을 수탈하는 데 이용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사항은 비록 수탈에 이용되기는 하였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법적 체계 및 제도적 사항이 바탕이었기에 한국과 일본 및 과거와 현재에도 유사하게 일어나는 법·제도적인 사항이었다. 따라서 그 사항을 부정적인 상황에 관한 판단과 동시에 활용 가치에 대한 고민도 병행할 필요도 있다.

Ⅲ. 한국의 광업법

1. 광물의 개념

광물이란 천연으로 산출되는 균질한 고체로서, 대부분 무기 과정에 의해 생성되고 화학조성과 결정구조를 갖는 물질이다. 법정 광물이란 지하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보호를 위해 광업법을 제정하여 실시 중이다.



<그림 3> 주요광물 예시¹⁷⁾

광업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광물의 채굴·취득을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업법 제3조에서는 광물학상의 광물 전부가 아니고 그 품위·광량·심도·필요성·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광물을 지정하였고, 이를 법정 광물이라 한다. 또한 광업권 설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광물이란 광업법 제3조의1에 따른 광물¹⁸⁾로 명시하고 있다.

17) 한국 광해광업 공단(<https://www.komir.or.kr/mine/contents/101>).

18) 광업법 제3조의1에서는 ““광물”이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磷

광업법은 기본적으로 제1조에서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산업이 발달할 수 있게 하려고 광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힘으로 광업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결국 광업법은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기반으로 국가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 제도 마련 등을 위한 법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주요 내용

광업법은 1951년 12월 23일 법률 제234호로 제정되었고 이듬해 2월 22일 시행되었다. 기본적으로 광업 및 광업권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광복 이후 광업 관련한 사항을 광업법을 통하여 관리 등이 되었기에 조선광업령의 폐지도 광업법의 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광업법에는 기본적으로 총칙, 광업법, 조광권, 국영광업, 토지의 사용과 수용, 광해의 배상, 감독 및 지원, 이의신청을 비롯한 보칙 및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광업법의 목적, 광업의 정의, 광업법, 조광권, 그 밖의 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주요내용

- 한국의 광업법은 1951. 12. 23. 법률 제234호로 제정· 1952. 2. 22. 시행되었고, 전문 제104조, 부칙 제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업 및 광업권 등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주요내용으로 구성

※ 광업법은 제정당시 제92조로 구성되었으나,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는 광업법은 제104조, 부칙 제3조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내용

“광업”의 정의	• 광업에 대한 광물의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礦), 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광업권은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탐사광물의 종류에 대해 각 59종류로 규정함
광업권	• 광업권 설정을 제10조를 통하여 물건으로 하고, 광업권 설정의 출원 등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라 그 출원과 허가를 별도로 규정함 • 광업권 설정에 대해 제28조에 따라 광업통상지원부장관에게 광업권 설정의 허가 통지를 받은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 하도록 규정함 • 채굴계획의 인가에 있어서는 제43조에 따라 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인허가의제 규정으로 인허가 청구의 절차를 설정함도 규정함
조광권	•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출 채굴·취득하는 권리와 관련한 조광권의 설정 및 설정인가 등에 대해서 조광권 설정은 제51조에 따라 서면에 의한 조광권 설정계약에 의하도록 규정, 설정인가는 제52조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라 산업통상지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으로 국영광업, 토지의 사용과 수용, 광해(鑛害)의 배상, 감독 및 지원, 이의신청, 권한위임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함

<그림 5> 광업법 주요 내용

광업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광업법의 제정목적에 대해 제1조에서 앞서 광업법의 역할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에서 광물의 채굴권에 대해 국가가 그 권능을 갖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이러한 광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광업은 광물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 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광업권은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정 광물의 종류에 대해 약 59종류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업권에 대해 제10조를 통하여 그 성질을 물건으로 하고 광업권 설정의 출원 등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라 그 출원과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업권 설정에 대해 제28조에 따라서 광업출원 원인이 광업권 설정의 허가 통지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세를 내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채굴계획 인가에 있어서는 제43조에 따라 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인허가 의제 규정에 따라 인허가 창구와 절차의 일원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취득하는 권리와 관련한 조광권의 설정 및 설정인가 등에 대해 그 조광권 설정은 제51조에 따라 서면에 의해서 조광권 설정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설정인가는 제52조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국영광업, 토지의 사용과 수용 및 광해의 배상, 감독과 지원, 이의신청, 권한 위임 등과 관련한 사항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원인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국가산업 발달이 원활하도록 근간 마련을 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4. 그 밖의 법령

광업 및 에너지와 관련한 법들의 경우 광업법 외에도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제정된 석유 및 대체 연료 사업법²⁰⁾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²¹⁾이 있다.

그리고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²²⁾이 있다. 나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법²³⁾ 등이 있다.

이처럼 자원의 경우 시대를 넘어 그 효용가치 및 경제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최근의 추세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생을 기반한 이들의 종합적인 검토는 지속되어야 한다.

20) 법률 제17532호 약칭 ‘석유사업법’.

21) 법률 제14679호 약칭 ‘해저광물 자원법’.

22) 법률 제17799호 약칭 ‘해외자원개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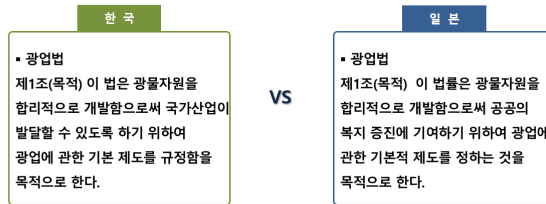
23) 법률 제18469호.

5. 검토

한국의 광업법은 광복 이후 중요한 광물자원과 관련한 사항을 한국이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관리 등의 내용상 변화 보다는 관리 주체인 국가가 기존의 조선광업령의 관리 주체인 일제가 아닌 한국이 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내용에 있어 조선광업령과 현격한 차이를 체감하기보다는 국권을 회복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이 광물자원과 관련한 권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현재 일본의 광업법과 그 제정목적 등의 유사성이 존재한다. 법에서 제정목적은 법 추구 방향과 역할 등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목적 규정의 유사는 근본적 유사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 흐름 등의 사항으로 보아 결국 일본의 광업법이 한국 광업법의 제정에 참고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韓 · 日 광업법



<그림 6> 한 · 일 광업법 제정목적 비교

비교법적으로 일본의 광업법은 제정 이후 전면 개정을 통하여 1950년 12월 20일 공포되어 1951년 1월 31일 시행되었다. 또한 1955년 12월 19일 개정하여 공포한 사항에서는 우라늄광 · 토륨광을 지정 광물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일본 광업법의 경우 대륙법 계열에 속하는 스페인 광업법을 모델로 하여 입법화²⁴⁾가 되었으며 광업권을 사적인 토지 소유권과 구분하여 공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내용이다.

현재, 한국의 광업법도 일본의 광업법과 내용상의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으며 실무적으로 광업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역시 유사하다. 또한 한국 법제 체계와 유사성도 있기에 한국의 자원의 합리적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해서는 그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다.

IV. 시사점

일제는 지난날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 인적·물적의 다양한 수탈을 하였다. 이는 우리의 뼈아픈 과거이자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아니 되는 슬픈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탈을 위한 합법을 가장한 악법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광물자원은 국민 경제상 중요한 물질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산업 경제의 활성화 등이 도모되면서 우리의 생활 향상에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광물자원은 자원 중에서도 핵심적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는 이러한 광물자원의 수탈에 굉장한 공을 들여 수탈하고 관리하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며 이는 조선광업령 등의 법제 흐름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광물자원 수탈을 위해 조선광업령 등을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비단 식민지 조선에만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24) 石井陽一 他 『スペイン その国土と市場』 科学新聞社出版局 1990年 227頁 참조.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일본에 적용하던 것을 편입시켜 식민지인 조선의 광물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 적용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또한 이는 광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등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조선광업령은 한국 광업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²⁵⁾

안타깝게도 역사적 흐름과 현실 등에 의해 현재 한국과 일본의 경우 행정체제와 법체제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²⁶⁾ 따라서 법제의 역사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광업법 관련 역사적·법제적 시사점의 고민과 생각의 환기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아픈 역사이지만 그 속에서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현재 우리에게 참고될 만한 사항을 선별하고 보다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논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현실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원 관련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속에서 新 광물자원 등의 효율화 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자원을 보다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정 광물들의 현실적 반영과 광물 관련 과학기술 및 광물 산업 분야의 발전 동향 등의 고려를 도모한 지속적인 관심과 국외 자원 관련 법제의 체계적인 검토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25) 일제강점기 조선광업령과 광업법의 유사성 및 한국 광업법과 일본 광업법의 유사성 검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제강점기 조선광업령은 한국 광업법 마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6) 행정부처의 업무 및 관련 법제 등에 있어 유사성이 상당하다. 예를 들면 광업법 관련에서도 한국의 경우 법제 담당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이다. 일본도 법제 담당부처가 경제산업성인데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업무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담당부처의 업무의 역할과 내용이 유사하며 이에 따르는 담당 법제도 유사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참고문헌

- 고승제(1953), 『한국 광업사 서설 - 한국 산업사 연구의 일작』, 한국
경제학, 『경제학 연구』, 1(1).
- _____(1959), 『근세한국산업사연구(近世韓國産業史研究)』, 대동문화사.
- 국가기록원(2013), 『일제문서해제-광업·미곡편』, 국가기록원.
- 국사편찬위원회(1968), 『일제침략하한국삼십육년사(日帝侵略下韓國
三十六年史三)』, 국사편찬위원회.
- 김대형·이경한(2011), 『국내광업법의 변천과 개정 광업법에 관한
법제적 고찰』,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자원공학회지』, 48(5).
- 배성준(2004), 『조선광업령』, 『한국독립운동사사전6』, 한국독립운동
사연구소.
- _____(2000), 『戰時下 ‘京城’지역의 공업통제』,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논총』, 88.
- _____(1995), 『1910년대 경성 공업의 식민지적 재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서울학연구』, 6.
- 이배용(1983), 『개항후 일본의 한국광산침략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사학회, 『이대사원』, 20.
- _____(1989), 『한국근대광업침탈사연구(韓國近代鑛業侵奪史研究)』, 일조각.
- 최영호(1996), 『일제의 ‘신민화’정책에 관한 연구』, 『國史館論叢』, 67.
- 허수열(2005), 『일제하 조선경제의 발전과 조선인 경제』, 한일역사공동
연구위원회, 『한일역사공동연구 보고서』, 5.
- 한창호(1971), 『일제하(日帝下)의 한국광공업(韓國鑛工業)에 관한 연구
(研究)』, 일신사.
- 石井陽一 他(1990), 『スペイン その国土と市場』, 科学新聞社出版局.

국사편찬위원회, <https://www.history.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 광해광업공단, <https://www.komir.or.kr>

일본 국회도서관, <https://dl.ndl.go.jp>

일본 법령색인, <https://hourei.ndl.go.jp/#>

The Flow and Implications of the Mining Law Seen from the Joseon Mining Decree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Yeon-joo Kim^{*}

Abstract

Various movements for carbon neutrality and eco-friendliness are proceeding globally grounded on the conversion of energy; however, resources like oil still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In this situation, legislation is an important issue in the preparation of the basic system to manage and cope with it properly. Korean legislation has been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law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Japanese colonial rule was based on the legislation to exploit labor and material from colonial Joseon in many ways then. This is our painful and unforgettable history.

For this reason or such, there are quite a lot of similar part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and the legal system. Therefore, based on the historical review of the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attempt to consider and contemplate historical and legal implications related to the Mining Law. It was such a painful history, but we should not keep living in it. Therefore, it is needed for us to select the items that can be referred to now and think about the issues from various perspectives for mutual survival.

In conclusion, from realistic perspectiv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and discuss it constantly to make new mineral resources efficient within the conditions related to resources changing globally and utilize Korean resources more usefully.

Keyword: Mining resources, the Japanese colonial era, resource control, the Joseon Mining Decre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A Former Kookmin University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Law Research Professor, Ph.D.
(E-mail: yeonjoo0622@yahoo.co.jp)